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519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519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5 선고 2021가소127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5.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5. 선고 2021가소12790 판결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암호화폐(코인) 채굴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9. 11. 29. 코인 채굴 딜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본인이 구입한 딜러 판권은 전산등록 이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9. 11. 30. 위 딜러등록 신청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D 명의의 계좌에서 2019. 12. 6.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라. E은 2021. 6. 1. 원고와 사이에 양도할 채권을 E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200,000원으로 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D는 2021. 6. 10. 원고와 사이에 양도할 채권을 D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2,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갑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자신이 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채굴로 얻는 코인이 아무런 액면가치가 없음에도 실제 금보유 가치가 있는 코인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 내지 코인 구입대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2019. 11. 20. 1,200,000원, 2019. 11. 30. 2,400,000원, D로부터 2019. 12. 6. 12,000,000원, E으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모집책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금융다단계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 C이 피고 B에게 계좌를 대여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며, 원고는 D, E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및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E, D의 채권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E 사이에 2021. 6. 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원고와 D 사이에 2021. 6.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기로 되어 있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도 채권양도 통지인은 채권양도인인 E, D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양도인인 E이나 D가 아닌 원고가 2021. 6. 16.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점, 원고는 2021. 6. 16.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바로 당일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D, E으로부터 D, E이 피고들에게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D, E의 채권양수금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채굴로 얻는 코인이 아무런 액면가치가 없음에도 실제 금보유 가치가 있는 코인인 것처럼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원고는 투자금이나 채굴코인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코인채굴 자격이 주어지는 딜러회원 등록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금이나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사 피고 C이 피고 B에게 계좌를 빌려 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C이 피고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 B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E, D의 채권 양수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범, 판사 권태관, 판사 장지혜